

##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미수령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6. 26.

###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안내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제2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 사유
				처분 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김ㅇ래	94.5.2.	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134 (이하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1회차 구직촉진수당 반환처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수급자격인정 철회 처분	기준금액 초과하는 일용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미신고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중단처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회차 구직촉진수당 60만원 반환처분</li> <li>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수급자격 인정 철회</li> <li>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</li> </ul>	미수령 등기반송

4. 공고기간: 2026. 6. 26. ~ 2026. 7. 9. (14일간)
5. 문의사항: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신하영(☎ 031-828-0874)